

第62回 (閉會中)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第2號
行政事務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9月 2日(月) 11時 08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淨化槽 現況報告 聽取

審査된 案件

1. 淨化槽 現況報告 聽取 1 面

(11時08分 開議)

○委員長 丁昌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鍾路區 淨化槽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查 特別委員會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特別委員會에서 재료 요청한 제반 서류가 구의회에 도착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에 입각해서 그동안 환경문제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점이 있습니다. 현금에 이르러서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전에는 저수지나 그렇지 않으면 댐에만 적조현상이나 낙조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만 지금은 하천은 물론이거니와 바다까지도 오염이 심각하게 우리 실생활에 와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정화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업체가 운용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기피하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로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1개 업체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혹하게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조리가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범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 최우선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고 분석하셔서 우리 종로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존에 조성된 구시가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4항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이 먼저 선서한 후 정화조 대행업체인 환경개발주식회사가 나중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市民局長이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명만 재창하시겠습니까. 市民局長님! 앞으로 나와주시시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宣誓. 本人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2일

清掃課長 姜光日

○委員長 丁昌熙 다음은 정화조 대행업체 환경개발주식회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 유성제 宣誓. 本人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2일

○委員長 丁昌熙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姜光日 清掃課長을 소개합니다.

丁連鎭 建築課長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丁昌熙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市民局長님으로부터 정확한 대행업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존경하는 정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에 우

선 감사드리며 종로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뇨정화조청소 일반현황,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법규위반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청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구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환경개발 주식회사로 '79. 5. 1 최초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3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연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행기간은 '94년 6월 20일부터 '97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우리구의 정화조는 2만3,671기이며 분뇨는 4,569기입니다.

서울시 전체 분뇨정화조 처리 허가업체 현황은 33개 업체로 1개 업체 대행구가 우리구를 포함 17개 구이고, 2개 업체에 대한 대행구가 8개구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체계를 설명드리면 수집·운반은 구청장 책임하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처리는 광역처리로써 서울시에서 난지, 중랑, 가양, 탄천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정화조는 난지 하수처리장을, 분뇨는 중랑 하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차량 및 인력은 정화조 차량 10대, 인력 24명으로 하루평균 313kl를 수거할 수 있으며 분뇨에는 차량 3대, 인력 4명으로 하루평균 23kl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5년 수거현황을 보고드리면 정화조는 하루평균 198.7kl를 청소하였고, 분뇨는 하루평균 8.6kl를 청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법규위반사항 처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 4. 동대문경찰서에서 첩보사항으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구속사유는 정화조 청소 용량을 속여 청소요금을 과다징수한 사항이며, 약식 기소되어 '96. 6. 28. 미확정 벌금 예납금 납부후 석방되었으며, 현재 사건이 법원에 사건 계류중입니다.

법규위반 통보내용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

체인 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 '95. 7. 19부터 '96. 4. 24일 사이에 종로구 삼청동 소재 삼청교육연수원 외 13개소 정화조 청소 실용량이 준공량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용량을 처리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여 그 차액인 742만5,75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행업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96. 7. 1.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 및 우리 구 법률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회신 내용을 종합검토 한 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취소사항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인 주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정화조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丁昌熙 委員長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 관계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타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여 종로구민의 편익 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丁昌熙 金賢植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관내 정화조 대행업체인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로부터 관내 정화조 청소업무의 현황과 정화조 청소요금 부당징수에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등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 유성제 환경개발 주식회사 대표 유성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업체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올리자면 1980년 5월에 금4,500만원 정도(추정)를 종로구청에 납부한후 분뇨청소차량 11대와 미화원 80여명을 인수받아 재래식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뇨수집·운반업을 해오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업은 1979년 5월부터 운영해 오다가 199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전체의 정화조 청소대상 물량을 기준으로 청소대상 물량이 많은 강남지역 등 일부구는 2개업체, 상대적으로 청소대상 물량이 적은 종로, 서대문구 등은 1개업체로 지정받아 책임청소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그간 강남지역 등 신개발 지역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정화조 청소대상 물량이 상당량 증가한 반면 우리 종로구의 경우는 오히려 청소대상 정화조가 감소되는 추세와 함께 도심지역의 교통체증 및 분뇨차량의 도심통행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구 관내의 서민층이 대부분인 4천여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뇨수거는 재개발로 인한 급격한 물량감소와 작업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요금 역시 '92년도에 조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있는 상태이나 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8~10% 정도 인상 지급 해야만 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차량 유지비 및 제반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해 회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회사를 왜 운영하고 있는냐고 반문 하실지 모르겠으나 현재 저희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40여명은 대부분이 구청시절부터 이 분야에 몸을 담아 20여년 이상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온 분들이며 딸려있는 식구들까지 치면 2백여명이 업에 매달려 생계를 꾸려나가는

실정으로서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어떡 하든 회사를 지탱하여 나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한 말씀을 다 올리긴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말씀을 올리고 있는 저로서는 무어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착잡한 심경일 뿐입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의 업체 및 종사 미화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넓으신 아량으로 포용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며 두서없는 말씀 이해해 주시고 다시한 번 정창희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구 분	총대상건수	조폐상보유(T)	현보유(T)	처리장
정 화 조	23,671	20톤	73톤	난지처리장
분 뇨	4,569	7.5톤	9.5톤	중량처리장
구 분	사무직	운전직	미화원	기 타
정 화 조	8	12	12	2
분 뇨		2	2	

■ 95년 3월이전 위생설비계 과장

95년 3월이후 서무계 이관(청소안내, 통지, 촉구, 청문, 과태료, 전 수과약, 미이행자조치, 수질검사, 불량정화조실태 등 과다한 업무

■ 애로사항

■ 건의할 사항

○委員長 丁昌熙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로부터 관내 정화조 청소 현황과 아울러 정화조 청소요금 부당징수에 관하여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호소만 있을 뿐이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언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 유성제 '96년 6월 5일 동대문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은 기타 여러 대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작업전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2만3,000여개의 정화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 기타 간부직 이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중앙교육연수원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1회청소를 한다는 규정에 '76년 7월 18일날 일부 청소를 하고 월 20일날 기타 그 다음 7월 21일날 나머지 용량을 청소를 했습니다. 다만 잘못됐다는 조사에 의하여 그 정화조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수정안 그것에 의하여 저 이하 우리 직원들한테 그 사실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막연한 추정만 하고 있을뿐 정확한 답변은 없을뿐더러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징수한 요금은 7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반납하고 약식기소라는 명칭하에 248만원 추정입니다. 그 돈을 납부하고 '76년 7월 28일 석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丁昌熙 경과에 대하여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특위 조사활동에 대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는 현장 파악과 자료조사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在岩委員 議席에서 - 委員長님! 현황 청취가 너무 미흡해요. 자세하게 좀 해야지요. 조금전에 委員長도 얘기했지만 사과성명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종로 전체에 대한 법에 저촉된 것 외에도 많을 거예요)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사건에 대한 그런 것은 검찰조사에 의해서 별도로 와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조사 기간이 있으니까 9일날 질의 끝내고 해야지요. 여기에는 시장한테 문의하고 고 문변호사한테 문의해서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걸 우리 종로구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사를 하고 9일날 질의받고 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성실한 증언과 검토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면서 제2차 특별위원회 散會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散會)

○出席委員 7人

丁昌熙 朴鍾植 羅在岩 千相旭 李萬魯
朴文培 洪起瑞

○出席 專門委員

蔣昭秀

○出席 關係公務員

市 民 局 長	金 賢 植
清 掃 課 長	姜 光 日
建 築 課 長	丁 連 鎮

○出席 證人

환경개발주식회사 대 표 유 성 제

